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단273679(본소), 2022가단25206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58599(본소), 2023나58605(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0가단27367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피고(반소원고) 2. D

피 고 3. E

피고(반소원고) 4. F

5. G

피고(반소원고) D, F, G 및 피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환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E 및 피고(반소원고) D, F, G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반소원고) D, F, G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 E 및 피고(반소원고) D, F, G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D, F, G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 E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 F, G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27. 매매(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는 피고 D, F, G에게 각 10,000,1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의 맏아들인 I(1998년 사망)의 생존 중인 유일한 자녀(원고의 동생인 J은 1995년 사망하였다)이고, 피고들은 H의 다른 자녀들이다.

나. H는 2003. 12. 12.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3.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9. 3. 27.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8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H는 2020. 5. 19. 사망하였다. 원고의 모친인 K는 2020. 8. 10. 인천가정법원에 H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20느단1712) 2020. 9. 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H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자신들의 상속분인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2019. 3. 27. 매매(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2019.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D, E, F, G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 E, F, G은 원고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할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27. H로부터 위임을 받은 다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인으로서 H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송대리인 B과 함께 이 사건의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 D, E, F, G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 반박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할 소송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소송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D, E, F, G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본소), 2013다97687(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H의 인감도장과 같은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한 H의 날인행위는 작성명의인인 H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그 날인행위가 H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 F, G은 H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없었고 위 매매계약서 또한 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53109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등 참조) 이는 날인행위를 한 작성명의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L요양원, M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H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9. 3. 27.을 전후한 2019. 2. 8. 시점의 K-MMSE 검사 결과 16점, 2019. 6. 18. 시점의 K-MMSE 검사 결과 19점으로서 경도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9. 7. 20.부터 L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할 당시 주 2~3회 찾아오는 원고를 잘 알아보았으며 주변의 간병인 등에게 아들(원고의 부친 I)이 먼저 죽고 난 후 원고와 살게 된 배경을 말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일과시간 동안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H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 F,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해석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8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3, 6, 10 내지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이 법원의 L요양원, M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H와 함께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여 왔고, H가 L요양원에 입소하여 원고와 떨어지게 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등 동거친족으로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H로서는 말손자인 원고가 H 사후에도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원고에게 그 거주지인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 H는 생전 피고 C, B(피고 C의 아들로서 H의 손자이다) 등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빌라의 명의를 원고로 바꿔놓겠다’, ‘원고에게 위 빌라를 준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에게 위

빌라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하는 것을 전제한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10,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N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H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9. 3. 27.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스스로의 부담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이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통상적인 태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H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1999. 3. 3.경 오토바이를 타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99가단55310), 위 사건에서 2001. 4. 25. 원고가 택시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중 소송대리인 보수 등을 제외한 약 80,000,000원이 원고가 아니라 H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H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H가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2019.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다음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위 화해금채권과 상계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할 의사를 가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자신들의 상속분인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F, G의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F, G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경우 이는 H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특별수익을 얻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D, F, G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원고의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 중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고와 함께 H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D, F, G의 유류분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가 원고의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본소제기일인 2020. 11. 18.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2. 7.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반소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 D, F, G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증여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위 피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32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H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액은 합계 402,041,412원이고 위 피고들은 그 중 자신의 상속분 각 6분의 1에 해당하는 67,007,902원을 지급받거나 공탁받은 사실, 원고는 2001년경 택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약 80,000,000원을 전액 H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상속재산 중 예금채권액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H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빌라의 1998. 7. 18. 기준 매매대금은 40,000,000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H는 사망 당시 이 사건 빌라 외에도 예금채권 등 상당한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피고들은 그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공탁받았으며 원고가 H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 또한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위 피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증여받음으로써 피고 D, F, G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D, F, G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빌라[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다세대주택

1층 130.18㎡ 2층 130.18㎡ 3층 122.825㎡

4층 98.415㎡ 지층 138.77㎡

(주택 114.29㎡ 주차장 25.4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 부평구 대 27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59.8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70분의 29.81

끝.

